

아. 전자산업(식각·증착공정)의 N2O 기본 배출계수를 1에서 0.8로, 저감효율을 0에서 0.6으로 개선 (별표6)

자. 혐기적 처리공정이 있는 하수처리공정의 메탄 배출계수를 현행 0.48kgCH4/kgBOD에서 0.18452kgCH4/kgBOD로 개선하고, 하수처리공정의 메탄 회수율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별표6)

차. 플레어스택의 폐가스 소각 활동자료의 불확도 완화 (별표6)

카. 천연가스 탈루 국가 고유 배출계수 신설 (별표6)

타. 연료별 국가고유 발열량 및 배출계수를 현행화('11년→'17년) (별표12)

파. 시료 채취 및 분석의 최소 주기 명확화 (별표13)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연수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 전자우편 및 팩스 모두 의견서 제출기한인 2019년 12월 15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1)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2) 우편 주소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66호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연수 사무관
- 3)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 sinyora11@korea.kr
- 4) 팩스 번호 : 044-201-659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 김연수 사무관(전화 : 044-201-65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9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주)경도(문주명)

나. 전화번호 : 02-2050-4244

2. 명칭 : 전진식 지지대와 신장폴리를 이용한 다이아몬드 와이어쏘에 의한 정위치에서의 암반절단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굴착

<기술의 요지>

무진동 암반굴착 작업의 경우 굴착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자유면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본 신기술은 노출면 (제1자유면)에 직각 방향으로 2개의 평행한 진입공(제2자유면)을 설치하고 그 내부로 와이어쏘가 장착된 지지대를 밀어 넣으면서 (전진식) 와이어쏘를 가동하여 소음과 진동,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하여 암반을 절단하는 친환경적인 절단 기술공법이다. 기존 기술은 암반절단이 진행됨에 따라 장비가 후방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신청기술은 장비를 고정(정위치) 시킨 후 신장폴리를 조정함으로써 와이어쏘 길이조절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범위>

발파진동 감소 및 암굴착시 암파쇄 능률 향상을 위한 제 2자유면을 설치함에 있어서, 양쪽 지지대 상에 다이아몬드 와이어쏘를 거치한 지지대를 전진시킴으로서, 정위치에서 깊은 심도까지 암반을 절단하여 자유면을 설치하는 방법 및 구동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은 암반절단 장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99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